

성남창업센터(판교역 창업카페) 입주기업 모집공고

성남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『성남창업센터(판교역 창업카페)』의 신규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(예비)창업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3년 05월 2일
성남산업진흥원 원장

1. 센터 소개

< 성남창업센터 소개 >

창업이라는 “정글” 속에서 **밝은 빛으로 성공의 길**을 제시하는 **창조적 커뮤니티 공간**,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는 **열린 기회와 교류를 통한 성장의 공간**

설립일

2021. 7월 개소

위치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6번길 11, 지하 1층 (판교역 알파지하광장)

면적(전용)

187㎡ (57평)

입주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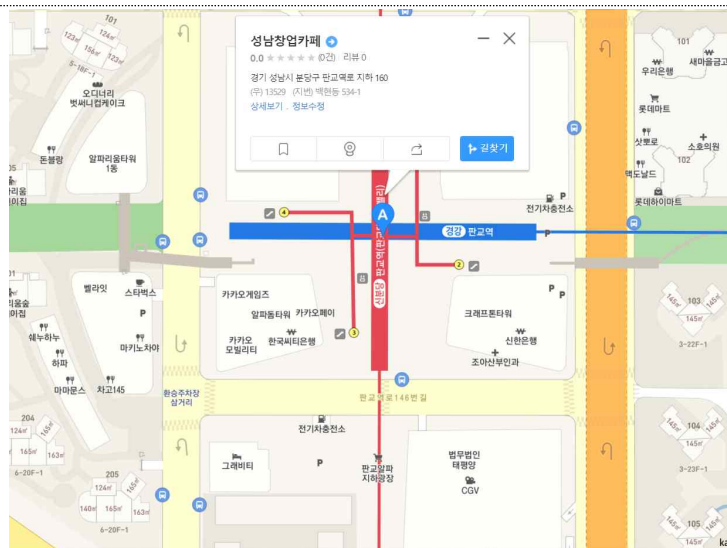
1인석, 2인석

이용시간

월 ~ 금 (09시 ~ 21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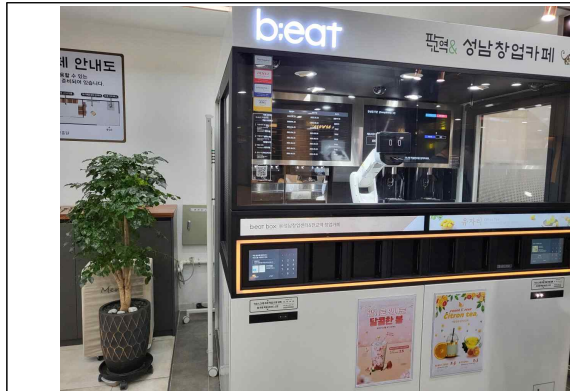
※ 주말 및 법정 공휴일은 센터 이용 불가

위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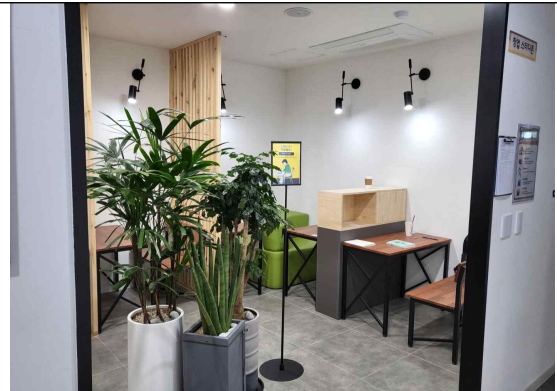


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 3번출구 (판교 알파지하광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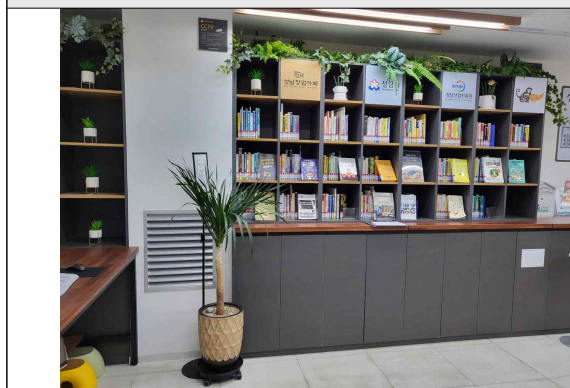
□ 판교역 창업카페 전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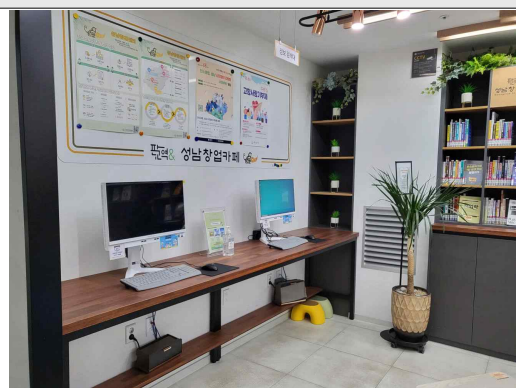
무인 커피 로봇



스터디카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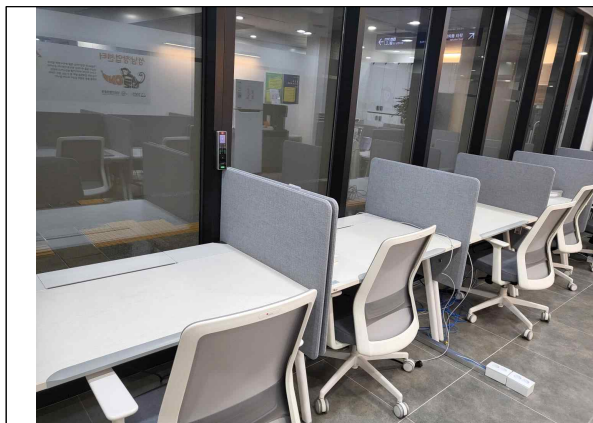


도서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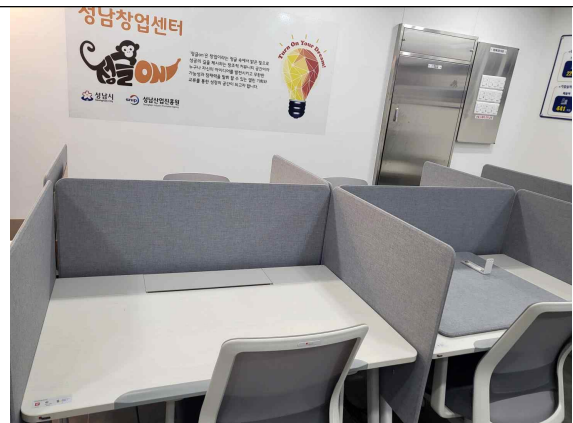


정보검색대

□ 판교역 창업카페 입주좌석



1인석



2인석

□ 지원프로그램

▶ 업무공간	- 임대료, 관리비, 책상 등 집기 무상제공 / 제조시설 입주 불가 ※ 좌석수에 따른 입주관리비(보증금), 멤버십비 있음	
▶ 창업지원 프로그램	멘토링	- 그룹멘토링, 상시멘토링,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
	네트워크	- 성남창업센터(정글ON) 입주기업과 네트워크
	사업화지원	- 사업화 자금 지원(기업당 5백만원 내외 지급)

2. 모집개요

□ 모집기간 : ~ 2023. 5. 24(수), 17시 까지

□ 모집대상 : (공고일 기준)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

□ 모집분야 : IT, SW 등 기술 기반 지식서비스업 ※ 제조시설 입주불가

□ 모집규모 : 6개사 내외 (1인석 3개사 + 2인석 3개사)

※ 모집규모는 접수 및 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심사 후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추가모집 예정

3. 신청자격 및 입주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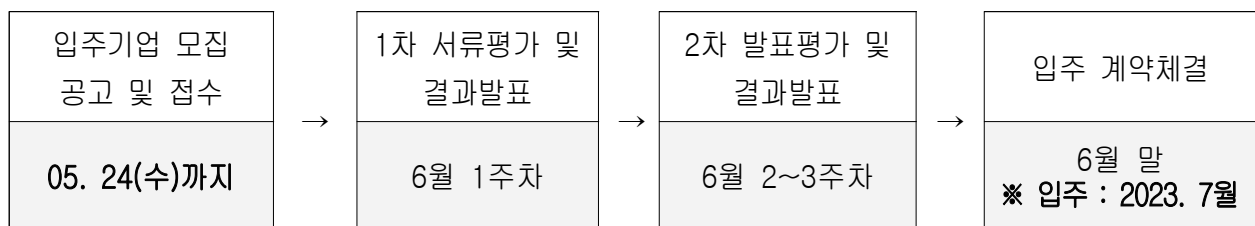
□ 신청자격

구 분	신청자격	비 고
예비창업자	▶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(개인,법인)이 없는 자	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호」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(기업) ※ 첨부문서 참조
창업기업 (개인/법인)	▶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내 - (개인) 사업자등록증상 ‘개업연월일’ 기준 - (법인) 법인등기부등본상 ‘회사성립연월일’ 기준	
지원 제외대상	▶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 ▶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(기업) ▶ 정부 부처,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사업 등에 참여 제한 중인 자(기업) ▶ 숙박업, 임대업, 유흥업, 자영업 등 단순 서비스 업종	

□ 입주개요

구 분	입주조건	
입주시기	▶ 2023. 7월 예정	
입주기간	▶ 입주계약 개시일로부터 6개월 (연장평가를 통해 6개월 연장 가능)	
입주비용	구 분	개방형
	입주관리비(보증금)	좌석당 20만원
	멤버십비	좌석당 2만원 / 월
	▶ 입주관리비는 시설 파손을 대비한 담보금으로 파손 물품 없을 경우 전액반납, 멤버십비 미반환 ▶ 입주관리비 및 멤버십비는 입주 계약체결 시 일시불로 전액 납부	
	[예시] (개방형/4인석) : 총 64만원 - 입주관리비 : 20만원 × 2인 = 40만원 ※ 퇴실시 반환 - 멤버십비 : 2만원 × 2인 × 6개월 = 24만원	
의무사항 및 안내사항	【사업장 이전(등록)】 ▶ (예비창업자) 입주 후 2개월 이내 센터 주소지로 신규 창업 필수 ▶ (창업기업) 입주 후 2개월 이내 센터 주소지로 사업장 본사 이전 필수 【입주공간 인원 확보】 ▶ 계약 체결 시에 입주공간 내 근무인원 확보 예정인 경우,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공간 내 근무인원 확보 의무 ▶ 성남창업센터 운영지침(별도 배포 예정) 준수 의무 - 입주 및 지원 : 입주 선정평가, 입주기간 및 연장, 입주승인 취소 등 - 행위제한 및 퇴소 - 시설물 관리, 실태조사 및 입주자 관리 등 ▶ 주차장 및 주차지원 없음	

4. 선정절차 및 선발방식



※ 단, 상기 일정은 진흥원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, 모집결과에 따라 서류평가 생략 가능

□ 서류평가 :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

□ 발표평가 : (1차) 서류평가 선정기업 대상 발표평가

□ 평가항목 : 창업자 및 팀역량, 기술력, 사업성 및 시장성, 입주계획 적정성 등

□ 결과통보 : 각 심사결과 및 향후 일정은 개별 통보

□ 가점사항

- ① 벤처기업 인증 획득기업 (5점) ※ 유효기간 내에만 인정
- ② TIPS 선정기업 (7점)
- ③ VC, AC 등 투자유치 실적(건당 1억원 이상) (5점)
- ④ VC, AC 등 투자유치 실적(건당 3천만원 이상) (3점)

※ 중복가점 불가하며 고득점 순으로 최대 1개만 인정

※ 증빙 미제출시 미인정

※ 서류평가지 심사위원 합산 점수에 가산반영 (서류평가 생략시 발표평가에 반영)

5. 접수방법

□ 접수마감 : ~ 2023. 5. 24(수), 17:00 까지

□ 접수방법 :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snip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
□ 제출서류

제출 서류(업로드)		법인기업	개인기업	예비창업자	
				창업경험有	창업경험無
①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동의서(지정양식)		○	○	○	
② 사업자등록증(사업자등록증명원)		○	○	×	
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		○	×	×	
④ 국세, 지방세 납세 증명서(유효기간內)		○	○	○ (개인 납세 증명)	
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(공고일 이후 발급)		○	○	×	
⑥ 사실증명*	가. 사업자등록사실여부	×	×	×	○
	나. 총사업자등록내역	○	○	○	×
⑦ 가점사항(해당자에 한해 제출)		○	○	×	
⑧ 인증, 지식재산권 증빙서류(보유시)		○	○	○	

* 사실증명은 공고일 이후 대표자 기준 발급분, 기간 설정없이 발급
(발급경로) 국세청 홈텍스-신청/제출-신청업무-사실증명신청

신청시 유의사항

-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미비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- 상기 ① ~ ⑧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총 1개의 PDF파일로 생성
- 파일명 = “기업명”으로 설정하여 온라인 업로드
- ※ 모아찍기 설정 등 인쇄방식 변경 불가

□ 문의처 : 성남산업진흥원 창업성장부

구 분	담 당 자	연 락 처
모집·선정	김효실 선임	☎ 031-782-3059

[첨부. 창업의 범위]

주 체	사업장소		사 례	창업여부
A 개인이	갑장소에서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	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조직변경
			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	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	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형태변경
			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A 법인이	갑장소에서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	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위장변경
			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	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	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형태변경
			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A 개인이	을장소에서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	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업종변경
			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	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	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			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A 법인이	을장소에서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	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사업승계
			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	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	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			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A가 (개인)	을장소에서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	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사업이전
			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	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	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사업확장
			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업종추가

1.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(4자리)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%를 넘는 경우
2. "갑" 장소는 기존사업장, "을" 장소는 신규사업장
3. "갑" 장소와 "을" 장소는 사회통념과 창업지원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공장 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
4. "B"법인은 "A"가 출자한 법인임
5. "기존 사업을 폐업하고"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